

「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7일

나. 발 의 자: 장미경, 강승수, 김근한, 김민성, 김영길, 김영태, 김재우, 김춘남, 박세채, 소진혁, 양진오, 이상호, 이정희, 장세구, 정지원, 추은희 의원(16명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5월 17일

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장 미 경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인 마을회관의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활용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3조)
- 토지 및 건축물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구미시 소유 마을회관의 신축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4조)
-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등은 시설비 예산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5조)
- 준용(안 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마을회관의 신축 및 보수에 대한 비용지원과 구미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- 총 사업비 2천만원 이하의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보수 사항과 구미시 소유 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을회관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공동체 거점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구미시 관내 마을회관은 75개소로, 이 중 사용검사 후 30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은 29개소로 집계되는 바,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서에서는 신축 등에 대한 자체 방안 마련 및 기준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